

의안번호	2215959
의 퇴 인	김위상의원
회 답 일	2026. 2. 6.
추계번호	26B0230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2항제5호의2(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신설	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5의2.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역량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2	안 제11조제2항제3호의2(시·도 계획의 수립 등) 신설	시·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3의2.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역량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	
3	안 제46조의2(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) 신설	국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 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(제1항)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, 시기·주기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
4	안 제47조(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)	정부는 <u>기후위기 취약계층</u>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,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·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(제1항)	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2항제5호의2(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• 미대상 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현행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적응역량 제고 대책 등을 반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11조제2항제3호의2(시·도 계획의 수립 등)	• 미대상 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시·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적응역량 제고 대책 등을 반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3	안 제46조의2(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안 제47조(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)	

2. 상세 사유

가.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(안 제46조의2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 취약계층¹⁾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제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 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경우,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됨
-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시범조사 및 조사 확대실시를 추진 중(수행기관:한국환경연구원²⁾)으로, 2025년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2026년에는 실태조사 전국단위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 및 결과 분석 등에 예산 3억 5,000만원을 편성함

[표 1]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관련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기금·회계명	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2026년 예산
기후 대응 기금	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(6331-301)	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(기후위기 적응대책수립 및 이행지원)	·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:350 -실태조사전국단위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 및 결과분석:30 -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관계자 교육: 30

자료: 기획재정부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의 범위, 시기·주기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1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8. “기후위기 취약계층”이란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 영향에 취약한 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노인, 영유아, 어린이, 임산부, 장애인, 저소득계층

나. 유해광선·고열·한랭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, 노무제공자, 기간제근로자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 영향에 취약한 계층

2)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

나.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(안 제47조)

-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,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·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경우, 관련 대책 등의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‘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 지원 사업’을 통해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적응인프라 구축을 지원 중임

[표 2] 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 지원 사업 예산: 2022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기금·회계명	세부사업 (내역사업)	2022	2023	2024	2025	2026
기후 대응 기금	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(6331-301) (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 지원 사업)	4,950	9,838	10,000	10,000	11,327

자료: 기획재정부

- 개정안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대책과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수립·시행될 경우,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시점에서 장래에 수립될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 대책에 따라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내용·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nabo.go.kr